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30512 손해배상(의)
원 고 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 1. 의료법인 의료재단
대표자 이사장
2. 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15. 4. 14.
판 결 선 고 2015. 4.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60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 소재 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임○○은 피고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근무하는 의사이며,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나. 피고 임○○의 2010. 9. 9.자 주사처방

1) 원고는 2010. 9. 9. 피고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 임○○에게 우측 견부 및 상지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2) 피고 임○○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내용과 원고에 대한 경추부와 우측 견부에 대한 엑스레이 및 골밀도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의 병명을 퇴행성 경추부 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우측 견부통 동반'으로 판단하였다.

3) 피고 임○○은 원고에게 해당 부위에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견관절 질환 등에 사용되는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하였다

다. 피고 임○○의 2010. 9. 10.자 주사처방

원고는 2010. 9. 10. 피고병원을 재차 내원하여 피고 임○○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

데, 피고 임○○은 원고에게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주사를 처방하였다.

라. 원고의 갑상선암 수술 등

1) 원고는 과거에 백병원에서 0.5cm 크기의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의 소화기 내과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진단받았는데, 2010. 12.경 피고병원의 소화기 내과에서 초음파, 방사선 검사결과 갑상선결절이 재차 확인되었다.

2) 원고는 2010. 12. 28. 피고병원의 내분비대사 내과로 전원하였고, 피고병원의 내분비대사 내과의 담당의사는 2011. 1. 19. 원고에게 '초음파 검사결과 과거 백병원에서의 검사결과와 같이 크기가 0.5cm이고 모양이 양호하니 6개월 후에 내원하여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다.

3) 원고는 피고병원의 내과에서 2011. 6. 23.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한 진료를 받고, 2011. 12. 22.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희망하였다가, 2011. 12. 26.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취소하고, 그 검사비용을 환불받아 갔다.

4) 원고는 2011. 12. 27.부터 인하대병원에서 갑상선 결절을 이유로 진료를 받다가, 2012. 3. 7.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7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임○○은 원고에게 2010. 9. 9. 및 2010. 9. 10. 관절강내 주사 및 신경간내 주사(이하 '이 사건 각 주사'라 한다)를 처방하였고,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는 갑상선암 등의 각종 질환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주사의 약물에는 '리도카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리도카인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 불규칙한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 사망에 이르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다.

그럼에도 피고 임○○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사를 처방함에 있어서 사전에 '리도카인'의 위험성을 설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주사를 과도한 용량으로 처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원고의 이 사건 각 주사로 인한 부작용 호소를 무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임○○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위반 또는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역시 피고 임○○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범위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갑상선암이 발병됨으로써, 원고는 노동능력이 전부 상실되어 장래 예상소득 39,604,340원을 상실하였고, 갑상선암 치료비로 약 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향후 약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할 예정이다.

나아가 피고들은 피고 임○○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위반 또는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104,604,340원(= 일실수익 39,604,340원 + 과거 치료비 500만 원 + 향후 치료비 1,000만 원 +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의료과실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하대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갑상선암 등의 각종 질병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때문이다.

① 이 사건 각 주사의 약물에는 리도카인이 포함되어 있다. 리도카인은 그 부작용으로 혈액 내 혈장 농도가 증가할 수 있고, 불안, 혀의 쇠 맛, 이명, 떨림, 어지럼증, 시야흐림,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의식혼미, 호흡정지가 유발될 수 있고, 기타 알레르기 반응은 발생할 수 있으나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리도카인의 인간에 대한 발암 유발성에 관하여는 어떤 연구나 증례보고가 없어 연관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 사건 각 주사의 약물에는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트리암시놀론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 트리암시놀론 역시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갑상선암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평소 앓고 있었던 갑상선결절의 영향으로 갑상선암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갑상선암 이외에도 피부변색, 탈모증상, 호흡곤란, 식사곤란 등의 각종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주사의 처방 이후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종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질환은 원고가 앓고 있던 갑상선결절, 갑상선암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명 피고 임○○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사를 처방하면서 '리도카인'의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갑상선암 등의 각종 질병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이 위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립

판사 박강민

판사 황여진